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1- 55호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1년 8월 31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체계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장기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나. 활발한 장기등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화합과 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등 기증 확산을 위하여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안 제7조)

나. 시장은 장기기증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시장은 장기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시장은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시장은 장기등 기증 운동 홍보를 위하여 장기등 기증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2, 팩스 032-440-87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기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장기등을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기등의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신청접수 내용을 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보내기 위하여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제4조(장기기증 접수창구 설치)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장기기증 접수창구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장기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기기증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계획 등) ① 시장은 장기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등기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장기기증 접수창구 운영) ① 시장은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과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군수·구청장의 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 기증 운동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의 감면
2. 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의 감면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장기등 기증 홍보대사 위촉) ① 시장은 장기등 기증 운동 홍보를 위하여 장기등 기증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등 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유명인, 저명인사 또는 기관 및 단체(기업 및 프로팀)를 장기등 기증 운동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기등 기증 홍보대사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계법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4조(정의) -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제13조(장기이식등록기관) - 제14조(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 제15조(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6조(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17조(등록기관의 업무)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아동복지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장·간장·췌장·심장·폐

나. 골수·안구

다.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이식대기자”란 자신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이식받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살아있는 사람”이란 사람 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하고, “뇌사자”란 이 법에 따른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6. “가족” 또는 “유족”이란 살아있는 사람·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가. 배우자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형제자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제13조(장기이식등록기관) ①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등록기관이 등록받을 수 있는 장기등의 종류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4.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③ 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는 제25조에 따른 이식의료기관에서 수행한다.

1. 장기등기증희망자·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업무
2.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신체검사에 관한 업무
3. 장기등기증희망자·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접수·등록 결과를 국립 장기이식관리기관에 통보하는 업무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접수·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등록에 관한 서식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①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장기등기증자의 경우: 제12조 및 제22조에 따른 본인이나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 여부와 등록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등록기관이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결과 장기등기증자로 적합한지 여부. 다만, 장기등기증자로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 결과가 있으면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장기등이식대기자의 경우: 등록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적합한지 여부

-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하면 그 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항목 및 방법, 그 밖에 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⑤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한 사람이 장기등의 기증 등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5조(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①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에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③ 등록기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만을 접수하고, 그 밖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신청 접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접수 결과를 통보받고 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⑥ 등록기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 장기등기증희망등록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등록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별도로 구획된 사무실[「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2.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업무 및 상담을 위한 인력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등록 결과 통보에 필요한 전산장비

②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기관이 등록받을 수 있는 장

기등의 종류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으로서 장기등의 종류를 정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 (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의 목적에 장기등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경우
3.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시설·인력 등을 고려할 때 장기등의 종류를 정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등록기관의 업무)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2.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에 관한 등록 결과의 사후 관리
3. 장기등의 등록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보·통계의 관리